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1.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운영 및 추진계획 수립과 국가 평생학습체제에 맞춘 장애인·소외계층 평생학습 추진, 평생교육 협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학습 사업 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의 영역을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따라 구체화하여 명확히

규정(안 제3조, 안 제5조)

나. 평생교육진흥에 대한 시장의 임무를 규정(안 제4조)

다. 구미시평생교육협회의 위원 위촉 대상을 상위법에 따라 규정

(안 제8조)

라. 마을평생교육지도자의 마을단위 역할 강화를 위한 하부조직 설치

근거 신설(안 제21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불임)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불임)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을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연간 운영계획 및 5년 마다 평생교육진흥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모든 시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애인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사업

4.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시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중전의 제5호) 중 “체육관련단체, 사설교육단체”를 “평생학습 및 교육 관련 단체”로 한다.

1.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관계 공무원

5. 평생학습 및 장애인 평생학습 전문가

제13조 중 “구미시평생교육원”을 “구미시평생학습원”으로 한다.

제15조 중 “구미시평생학습원”을 “구미시평생학습원, 평생학습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로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구미시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는 읍·면·동별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평생교육의 영역) 평생교육의 영역은 학교의 정규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u>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u> ,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의 영역) ----- ----- ----- <u>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u> ----- -----.
제4조(평생교육진흥)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u>평생교육진흥정책</u> 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평생교육진흥) ① ----- ----- ----- ----- <u>연간 운영계획 및 5년 마다 평생교육진흥정책</u> ----- -----.
②·③ (생략) <u><신 설></u>	②·③ (현행과 같음) ④ <u>시장은 모든 시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활동을 하여야 한다.</u>

제5조(경비보조)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신설>

<신설>

3. (생략)

제8조(구성) ① (생략)

② 협의회는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2. (생략)

3. (생략)

4. (생략)

<신설>

5.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체육 관련단체, 사설교육단체, 시민 등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제5조(경비보조)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사업

4.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시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5. (현행 제3호와 같음)

제8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관계 공무원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평생학습 및 장애인 평생학습 전문가

6. ----- 평생 학습 및 교육 관련 단체-----

경험이 풍부한 자	-----
제13조(위치) <u>구미시평생교육원</u> 및 평생학습관 등은 구미시 관 할구역 내에 둔다.	제13조(위치) <u>구미시평생학습원</u> - ----- -----.
제15조(평생교육사 등) 시장은 <u>구 미시평생학습원의</u> 효율적인 운 영과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법 제24조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사 를 비롯하여 운영에 필요한 직 원을 둔다.	제15조(평생교육사 등) ---- <u>구미 시평생학습원, 평생학습관, 읍 · 면 · 동 평생학습센터</u> ----- ----- -----.
제21조(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 회) (생 략)	제21조(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 회)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u>구미시 마을평생교육지도자 협의회는 읍 · 면 · 동별로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u>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① 시·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군·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군·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군·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시·군·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국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5.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시·군·구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4. 1. 28., 2016. 5. 29.>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기회 확대 방안 및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④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의3(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5조 경비보조와 관련하여 정책·사업의 시행과, 지원 대상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정 수반 요인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됨.
(안 제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안 제5조에 신설되는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기존에 상위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던 사업으로 따라 기존 지원 사업에서 큰 변화는 없을 예정이며 사업의 필요에 따라 예산의 증액이 있더라도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4. 작성자

- 평생교육과 지방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김재현 (054-480-4333)

소 관 부 서		평생학습과
입 안 자	과 장	이 동 상
	담 당	김 나 현
	담 당 자	김 재 현 (480-4333)